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② 「도시가스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배관”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(管)으로써 본관, 공급관,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.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가.
가. 발전용: 전기(電氣)를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)
나. 열병합용: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하며, 해당 열병합 설비와 동일 부지 내 부수적 설비로서 신규 설치(신설, 연료대체)되는 열전용 설비도 포함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② 「도시가스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	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
가. 발전용: 전기(電氣)를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. <u>이하</u> <u>나목에서 같다</u>)	가. 발전용: 전기(電氣)를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
나. 열병합용: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	나. 열병합용: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(시설용량 <u>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하며, 해당 열병합 설비와 동일 부지 내 부수적 설비로서 신규 설치(신설, 연료대체)되는 열전용 설비도 포함한다</u>)

3 ~ 4. (생략)	3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